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57
----------	-----

2023년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3일 운영회 의원 외 20명
2.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운영회 의원)

#### 1. 제안이유

-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3. 2. 14.~ 2023. 2. 19.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이 조례 제1조의2에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조의2(기능)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

	<p><u>송체계 개선</u></p> <p>4. <u>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u> <u>의 사용</u></p> <p>5. <u>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u> <u>정</u></p> <p>6. <u>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u> <u>결과의 활용</u></p> <p>7. <u>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u> <u>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u></p> <p>8. <u>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u>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u> <u>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u> <u>항</u></p>
--	--

## 2) 검토의견

- 「응급의료법」 제13조의6<sup>1)</sup>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 
- 1) 「응급의료법」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근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 ~ ④ <중략>
- ⑤ 시·도위원회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록 위임하고 있음.

- 따라서 「응급의료법」에서 위임한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그 “기능”의 경우,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각종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는<sup>2)</sup> 조례나 규칙 등에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sup>3)</sup>.
- 또한,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sup>4)</sup>.
  - 자문기관인 위원회규정에서 규정되고 있는 조항들은 1) 설치근거(목적), 2) 위원회의 기능, 3) 위원회의 구성, 4) 임기, 5) 위원장의 직무, 6) 회의, 7)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8) 전문위원, 9) 간사, 10) 실무위원회, 11)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2) 공청회 등의 개최, 13) 수당, 14) 운영세칙 등을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자료: 법체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2022. 8.)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17.

두고 있음<sup>5)</sup>).

- 이에, 위원회의 설치근거(목적) 다음에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한 규정 방식으로 보여지며, 위원회 “기능”이 조례에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됨.

나.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u>&lt;신설&gt;</u>  ②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5) 자료: 박영욱(2013. 2.)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p47

## 2) 검토의견

- 「응급의료법」 제13조의6(6)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상위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동의함.

##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기능”이 조례에 명확히 드러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6) 「응급의료법」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③<중략>

④ 시·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생략>.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5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3일

발 의 자: 윤영희,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남창진, 박성연,  
박칠성,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유정희,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1명)

## 1. 제안이유

-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응급의료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 나.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능)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생략)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신설>

② (생략)

-----  
-----  
-----  
-----.

② -----  
시장-----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